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2. 7.(수) 12:00
(지 면) 2024. 2. 8.(목) 조간

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

- 2027년까지 약 94조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
-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한 「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」 발표
-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고려,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%까지 확대

□ 지방공기업 투자계획 ('24.1.기준, 총사업비 10억 이상)

○ 2024년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**20조 2,511억원***

* '24년 당초예산 17.5조원을 확정('23.11.~12.)한 후에도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2.7조원 추가 발굴 → '23년 당초예산 17.1조원 대비 **3.1조원(18.2%) 증가**

- **주택공급·토지개발**(11.1조), **상·하수도**(5.9조), **환경·안전**(1.2조)에 중점 투자

○ 2025년 이후 **향후 3년간**(2025~2027년) **투자계획은 73조 4,756억원**

□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

❶ 투자여력 확보	▸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대 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 ※ 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10% → 최대 50% ▸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※ 광역개발공사(300% → 350%), 기초개발공사(200% → 230%) ▸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 ※ 부채산정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제외
❷ 투자절차 간소화	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※ 예타 등 유사검토를 거쳤거나 소액 출자 시 면제 ▸ 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 ※ 사업비 증가(20% → 30%), 사업 지연(3년 → 4년)
❸ 투자영역 확대	▸ 사업범위 확대 ※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▸ 사업지역 확대 ※ 지자체 협의시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
❹ 투자유인 제공	▸ 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 ▸ 신규사업 발굴 및 장애요인 해소 지원
❺ 투자 신속집행	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상향 ※ 57% (최근 5년중 최고) ▸ 신속집행 관리 강화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2월 5일(월) 15시,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*를 개최하여 「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* 「지방공기업법」 §78의5 : 위원장(차관)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, 지방공기업 주요정책 심의

○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,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.

○ 특히,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,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□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*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,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**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.

* 「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」 발표('22.7.) 이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, 재무건전성 강화 등 추진

** 부채비율('22년 기준) : 국가공기업(250.4%) > 민간기업(122.3%) > 지방공기업(101.0%)

○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, 5대 핵심전략*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* ❶투자여력 확보, ❷투자절차 간소화, ❸투자영역 확대, ❹투자유인 제공, ❺투자 신속집행

□ 이번 대책은 지자체·지방공기업·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,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투자여력 확보

○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,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.

* 직접사업 : 자본(자본금 + 잉여금) 증가 → 공사채 발행한도(예 : 광역개발공사는 자본(순자산)의 300%) 증가
출자사업 : 자본금 증가 → 출자한도(예 : 자본금의 10%) 증가

※ 예 : 대전시,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,300억원 규모로 출자하여 개발사업 등 추진 예정
→ 공사채 최대 1조 8,900억원 추가발행 가능 & 타법인 출자한도 630억 원 증가

○ 또한,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*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%(현행)에서 최대 50%까지 확대하여,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* ①구체적 사업계획 수립, ②지방의회 의결, ③부채비율에 따라 출자한도 차등 적용

부채비율	0%이상~100%미만	100%이상~200%미만	200%이상
출자한도	자본금의 50%	자본금의 25%	자본금의 10% (현행)

※ 예 :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25% 또는 50%로 상향, 출자한도는 총 2조 3,825억원(최대치, '22년 결산 기준) 증가

○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,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*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광역개발공사 : 순자산의 300% → 350% / 기초개발공사 : 순자산의 200% → 230%

※ 예 : 16개 광역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총 12조 8,033억원(최대치, '22년 결산 기준) 증가

○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*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,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청사, SOC 건설 등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기면서 선교부하는 사업비

※ 예 : 충북개발공사의 경우, 부채산정 기준 완화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2,056억('22년 결산 기준) 만큼 공사채 발행을 통한 추가 사업 가능

2. 투자절차 간소화

○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,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여,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사업비 증가(20%) 또는 사업 지연(3년)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하여,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.

* 사업비 증가 : 20% 증가 → 30% 증가(예타) / 사업 지연 : 3년 지연 → 4년 지연(투심)

3. 투자영역 확대

○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(예 : 신재생에너지사업),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(예 : 해상여객운송사업)을 당연적용사업*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

	당연적용사업(지방공기업법 §2①)	**임의적용사업**(지방공기업법법 §2②)
특징	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	수익성을 만족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
종류	상하수도, 도시철도, 자동차운송, 지방도로, 주택, 토지개발	-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 - 체육시설업, 관광업 등

※ 예 :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하여,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 가능

○ 또한,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(~'24.9월)하여,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.

※ 예 : 서울시-강원도-삼척시 업무협약을 통해, 서울주택공사는 지방이주 희망 서울시민을 위해 강원도 삼척에 골드시티를 건설하는 사업 추진

4. 투자유인 제공

○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,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○ 또한,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*을 구성하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,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* 행안부-지방공기업평가원-지방공기업 실무자로 구성

5. 투자 신속집행

○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,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%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.

○ 그리고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,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하여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·토지개발, 노후시설 정비,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,511억 원을 투자*할 계획이다.

* '24년 당초예산 17.5조원을 확정('23.11.~12.)한 후에도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2.7조원 추가 발굴 → '23년 당초예산 17.1조원 대비 3.1조원(18.2%) 증가

< '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>

구분	주택공급 토지개발	상하수도	환경·안전	산업단지	교통	에너지	기타	총계
투자액*	11조 931억	5조 9,892억	1조 1,828억	7,839억	3,098억	679억	8,244억	20조 2,511억
전년대비**	13.6%	28.9%	2.1%	69.4%	1.8%	17.4%	13.2%	18.2%
사업건수 (신규)	253(34)	1,280(216)	101(33)	56(11)	49(10)	15(1)	128(28)	1,882(333)

* '24년 당초예산에 추가 발굴한 투자 예산 포함 ** '23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비교

○ 또한, 2025년 이후 3년간(2025~2027년) 지방공기업은 총 73.5조*(연평균 24.5조원)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* 지역별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제출된 투자계획 금액

□ 행정안전부는「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」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*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,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*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△지방공사의 '중장기 재무관리계획' 수립 의무화 △'부채중점관리제도' 운영 △경영평가(매년 실시)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'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' 등 실시

□ 이상민 장관은 “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”라며, “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중근 (044-205-3961)
		담당자	사무관	여성민 (044-205-3962)
	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	책임자	과 장	장재원 (044-205-398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우 (044-205-3987)

모두의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('23.1.27)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방향

정책 방향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

목 표

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→ 지방 중소기업의 일거리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→ 지역경제 회복

핵심전략	추진 과제
1 투자여력 확보	▸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대 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 ▸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▸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
2 투자절차 간소화	▸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 ▸ 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
3 투자영역 확대	▸ 사업범위 확대(신재생에너지사업 등) ▸ 사업지역 확대(관할지역 외)
4 투자유인 제공	▸ 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 ▸ 신규사업 발굴 및 장애요인 해소 지원
5 투자 신속집행	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상향 ▸ 신속집행 관리 강화

참고2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

❶ 투자여력 확보

○ (**자본금 확대**) 지자체의 출자 유도를 통해 **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***

*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, 공사채 발행한도(예 : 자본(순자산)의 300%) 및 출자 한도(예 : 자본금의 10%)가 증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

- **직접사업** : 자본(자본금+잉여금) 증가 → 공사채 발행한도* 증가 → 투자여력 확보
  *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(순자산) 규모에 연동(예 : 광역개발공사는 자본(순자산)의 300%)
- **출자사업 :** 자본금 증가 → 출자한도* 증가 → 투자여력 확보
  * 출자한도는 자본금 규모에 연동(자본금의 10%)

사례 대전시, 대전도시공사에 **5년간 6,300억원 규모로 출자**하여 개발사업 등 추진 예정
→ 공사채 최대 **1조 8,900억원 추가발행** 가능 & **타법인 출자한도 630억원 증가**

○ (**타법인 출자한도 상향**) **일정요건을 충족***하는 경우, 지방공기업이 **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**(자본금의 10% → **최대 50%**)

* 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② 지방의회 의결 ③ 부채비율에 따라 출자한도 차등 적용

부채비율	0%이상~100%미만	100%이상~200%미만	200%이상
출자한도	자본금의 50%	자본금의 25%	자본금의 10% (현행)

사례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본금의 25% 또는 50%로 상향*, **출자한도**는 총 **2조 3,825억원**(최대치, '22년 결산 기준) **증가**

* 50% : 부산·충남·전남·경북·제주, 25% : 서울·대구·인천·대전·울산·충북·전북·경남, 10% : 광주·경기·강원

○ (**공사채 발행한도 상향**) 지방공기업이 **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** 시, **공사채 발행 한도**를 공공주택사업 수준(광역 : 350%, 기초 : 230%)으로 **상향***

* 광역개발공사 : 순자산의 300% → **350%** / 기초개발공사 : 순자산의 200% → **230%**

사례 16개 광역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**총 12조 8,033억원**(최대치, '22년 결산 기준) **증가**

○ (**부채산정 기준 완화**) **공사채 발행 심의** 시 **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***을 **부채에서 제외**(지방공기업 재무 부담 없이 공사채 발행 가능)

* 청사, SOC 건설 등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기면서 선교부하는 사업비

사례 충북개발공사는 부채산정 기준 완화 시 **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2,056억**('22년 결산 기준) **만큼 공사채 발행**을 통한 **추가 사업** 가능

❷ 투자절차 간소화

○ (**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**) **유사 검토**(예비타당성 조사 등)를 거쳤거나, **소액을 출자**(예 : 1억 미만)하는 경우 **타당성 검토를 면제**

○ (**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**) **사업비가 증가**(20%)하거나 **사업이 지연**(3년)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**재검토 기준**을 **완화***

* 사업비 증가 : 20% 증가 → **30% 증가**(예타) / 사업 지연 : 3년 지연 → **4년 지연**(투심)

❸ 투자영역 확대

○ (**사업범위 확대**)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**중장기 수익성**(예 : 신재생에너지사업)이 있거나 **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**(예 : 해상여객운송사업)을 **당연적용사업***에 **추가**하여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투자 지원

*「지방공기업법」§2① :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

사례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역 항로에 지방공기업이 투자하여, **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서해5도 등 섬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** 가능 (해수부 건의)

○ (**사업지역 확대**) **지자체 간에 협의**를 하는 경우 **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**할 수 있도록 **법령에 근거 규정** 마련

사례 서울시-강원도-삼척시 업무협약을 통해, **서울주택공사가** 지방이주 희망 서울시민을 위해 **강원도 삼척에 '골드시티' 사업 추진**

❹ 투자유인 제공

○ (**인센티브**)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, **지자체**에는 **재정적 유인**을, **지방공기업**은 **경영평가 시 가점**을 부여

○ (**컨설팅**)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TF를 구성하여, **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기획 지원** 및 **장애요인 발굴·해소**

❺ 투자 신속집행

○ (**신속집행 목표율 상향**) '24년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**최근 5년 중 최고 수준***(57.0%)의 **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**

*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목표 : ('20) 56.7% → ('21) 56.0% → ('22) 56.5% → ('23) 56.5%

○ (**신속집행 관리 강화**) **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**하고, **집행률 부진 기관을 컨설팅**하여 목표 달성에 총력

참고3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점

구 분		현재는(As-is)		앞으로는(To-be)
투자여력 확보	자본금 확대	▸ 자본금 규모가 작아 투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사 多	➜	▸ 자본금 규모 확대를 통한 **용이한 자금 조달**로 **투자 증가**
	타법인 출자한도 상향(시행령 개정) ※ 10% → 최대 50%	▸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 한계	➜	▸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기업은 **대규모 출자사업 추진 가능** **광역개발공사의 출자한도 2조 3,825억원 증가**
	산업단지 개발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※ 광역 : 300% → 350% 기초 : 200% → 230%	▸ 자금 부족으로 산업단지 개발 제약	➜	▸ 공사채 발행한도 부담 완화로 **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 가능** **광역개발공사의 공사채 한도 12조 8,033억원 증가**
	공사채 발행 심의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 ※ 부채산정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제외	▸ 공사채 발행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불리하게 작용		▸ 지방공기업 부담 완화 등으로 공사채 발행을 통한 **사업추진 여력 확보** **광역개발공사의 공사채 한도 1조 4,207억원 증가 효과**
투자절차 간소화	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(법 개정)	▸ 유사 검토를 거쳤거나, 소액 투자임에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투자 지연	➜	▸ 유사 검토를 거치거나, 소액 출자의 경우 **적기에 투자 가능**
	신규 투자사업 재검토기준 합리화 ※ 비용 증가 : 20% → 30% 사업 지연 : 3년 → 4년	▸ 엄격한 재검토 기준으로 사업이 추가 지연	➜	▸ 재검토 기준 완화로 **신속한 투자 지원** **최소 6개월 기간 단축**
투자영역 확대	사업범위 확대(법 개정) ※ 신재생에너지 해상여객운송 사업	▸ 단기 수익성이 낮아 사업 추진 어려움	➜	▸ **중장기 수익성**이 있거나, **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 투자 가능**
	사업지역 확대(법 개정)	▸ 근거 규정이 없어 他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모호	➜	▸ **지자체 간 협의** 시 **他지자체 관할구역**에 대한 **투자 확대** 가능
투자유인 제공	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	▸ 지자체·지방공기업 투자유인 부족	➜	▸ 지자체·지방공기업의 **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** 여건 조성
	신규사업 발굴 및 장애요인 해소 지원	▸ 지방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한계	➜	▸ 지원 TF 등을 통한 장애요인 해소 등으로 **차질없는 투자 이행 가능**
투자 신속집행	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상향 ※ 목표 : 56.5% → 57.0%	▸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유사수준으로 목표 설정	➜	▸ 대규모 SOC 등의 **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들이 조기에 집행**
	신속집행 관리 강화	▸ 계획된 투자가 집행이 안되는 경우 발생	➜	▸ 신속집행 관리 강화로 **계획된 투자가 적극 집행**되도록 유도

참고4 지방공기업 투자계획

□ '24년 지방공기업 투자 계획 ※ 총사업비 10억 이상

○ (총괄) 지방공기업의 '24년 투자계획은 20.2조원*

* '24년 당초예산 17.5조원을 확정('23.11.~12.)한 후에도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2.7조원 추가 발굴 → '23년 당초예산 17.1조원 대비 3.1조원(18.2%) 증가

○ (분야별) 전 분야 전년대비 상승, 주택공급·토지개발(11.1조, 54.8%), 상·하수도(5.9조, 29.6%), 환경·안전(1.2조, 5.8%) 순으로 큰 비중 차지

< '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>

구분	주택공급 토지개발	상하수도	환경·안전	산업단지	교통	에너지	기타	총계
투자액*	11조 931억	5조 9,892억	1조 1,828억	7,839억	3,098억	679억	8,244억	20조 2,511억
전년대비**	13.6%	28.9%	2.1%	69.4%	1.8%	17.4%	13.2%	18.2%
사업건수 (신규)	253(34)	1,280(216)	101(33)	56(11)	49(10)	15(1)	128(28)	1,882(333)

* '24년 당초예산에 추가 발굴한 투자 예산 포함 ** '23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비교

□ '25년 이후 3년간 주요 투자 계획 ※ 총사업비 10억 이상

○ (총괄) '25년 이후 3년간('25~'27) 투자계획은 73.5조원*(연평균 24.5조원)

* 지역별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제출된 투자계획 금액

< '25~'27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>

구분	주택공급 토지개발	상하수도	산업단지	환경·안전	교통	에너지	기타	총계
투자액	37조 6,747억	19조 8,441억	9조 9,335억	2조 678억	1조 5,183억	5,106억	1조 9,266억	73조 4,756억
비중	51.3%	27.0%	13.5%	2.8%	2.1%	0.7%	2.6%	100.0%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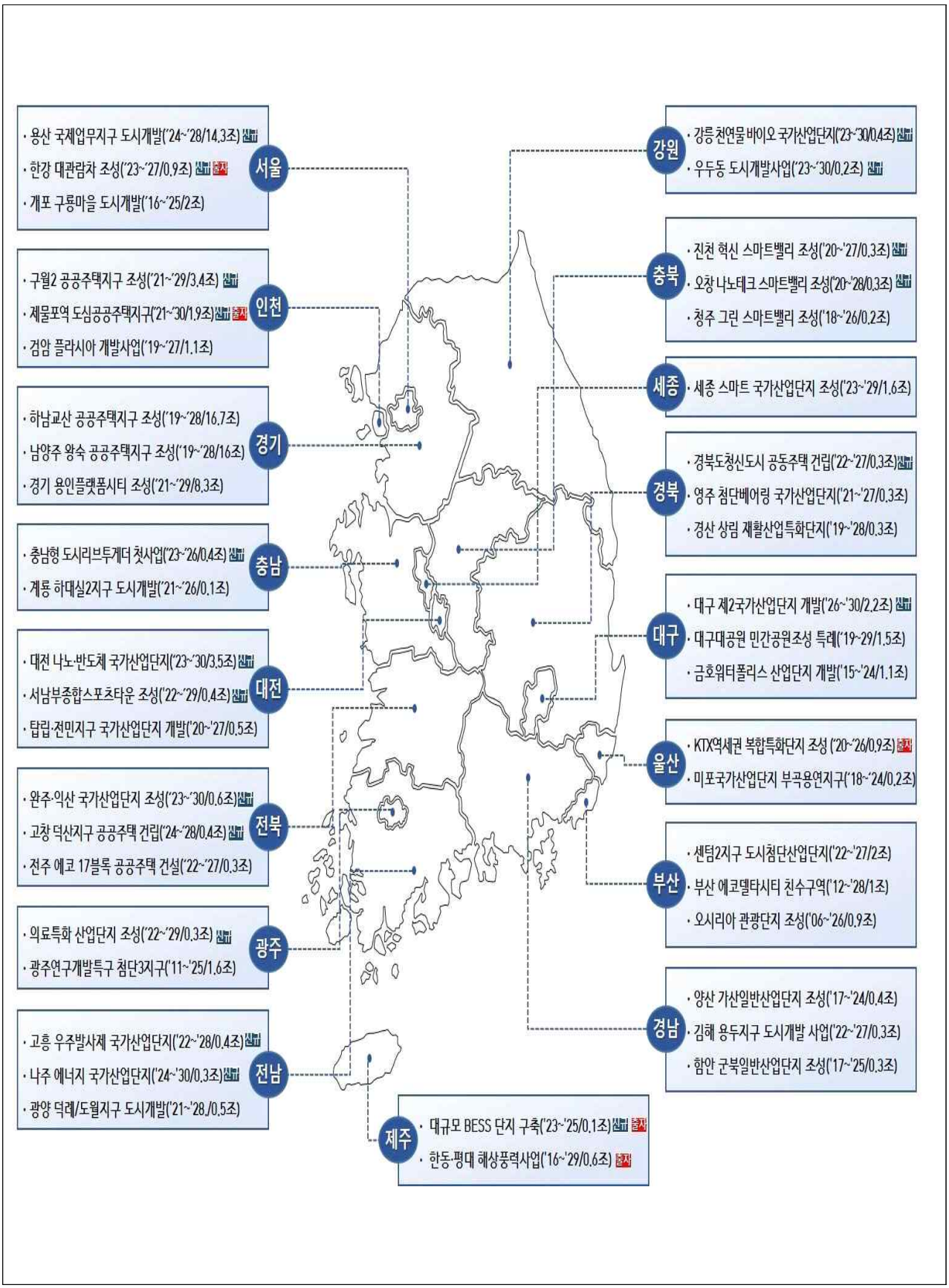
참고5 지방공기업 참여 주요사업